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1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박균택 · 박지혜 · 김기표
김주영 · 이건태 · 정진욱
권칠승 · 이성윤 · 김준형
신정훈 · 박해철 · 박홍배
박상혁 · 박희승 · 황명선
정준호 · 양부남 · 김용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제주 4·3에서부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12·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전두환 · 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 · 횡령 · 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하였으며, 일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 불가를 이유로 몰수나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수익이 상속·증여·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환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한 부정축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국제기구에서도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부터 제11조의10까지 신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이하 “반인권적 국가범죄”라 한다)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같은 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같은 법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각 행위로 얻은 재산

- 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원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 2) 공무원이 범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 3)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 4)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

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5) 1)부터 4)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의 특례)

① 제2조제2호 다목의 범죄수익 등 재산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범인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몰수(이하 “독립몰수”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이하 “독립추징”이라 한다. 이하 같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립몰수·추징할 수 있는 몰수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 반환을 받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의2(독립몰수·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이 수인의 재산권자 사이에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에 의하
되 주된 재산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한다.

④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제11조의3(독립몰수·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 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
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1조의3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
는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
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몰수대상재산의 재산권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주소,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송달방법
5.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정청구액
2. 추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주소,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송달방법
5.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청구서 부분의 송달) ① 법원은 제11조의3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송달불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의3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1조의4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청구서 및 보정서 부분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1조의3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1조의7(독립몰수·추정의 심리) ① 법원은 제11조의3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

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결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심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심리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

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된다.

제11조의8(독립몰수·추징의 선고) ① 법원은 제11조의3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1조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각하한다.

제11조의9(형사소송법의 준용) 독립몰수·추징 절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1조의10(위임규정) 독립몰수·추징 청구, 심리, 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내지 제11조의10 규정은 이 법 최초 시행 전에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u> <u>(이하 “반인권적 국가범죄”라 한다)를 범한 사람</u> <u>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u> <u>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u> <u>이용하여 「형법」 제129</u> <u>조부터 제133조까지, 같은</u> <u>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u> <u>지, 같은 법 제359조 또는</u> <u>제360조의 각 행위로 얻은</u> <u>재산</u> 1) <u>공무원(「행정기본법」</u> <u>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원</u> <u>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u> <u>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u> <u>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u>

3. ~ 5. (생략)

<신설>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2) 공무원이 범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3)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5) 1)부터 4)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

의 특례) ① 제2조제2호 다목
의 범죄수익 등 재산은 이 법
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범인의 사망 또는 범죄
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독
립하여 몰수(이하 “독립몰수”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
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
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
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이하
“독립추징”이라 한다. 이하 같
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독립몰수·추징할 수 있는
몰수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
이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 반
환청구로 인해 범인 외의 자에
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
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신 설>

있다. 다만, 추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 반환을 받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의2(독립몰수·추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이 수인의 재산권자 사이에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에 의하되 주된 재산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신 설>

<신 설>

중 1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한다.

④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제11조의3(독립몰수·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 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 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4(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1조의3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

<신 설>

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
유 및 적용법조

4. 몰수대상재산의 재산권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주소,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송달
방법

5.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
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정명령청구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정청구액

2. 추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
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진을 필요로 하는 이
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주소,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송달
방법

5.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
인의 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청구서 부분의 송달)

<신 설>

① 법원은 제11조의3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송달불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의3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1조의4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청구서 및 보정서 부분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6(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1조의3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신 설>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1조의7(독립몰수·추징의 심

리) ① 법원은 제11조의3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

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결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심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심리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

<신 설>

<신 설>

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
된다.

제11조의8(독립몰수·추정의 선

고) ① 법원은 제11조의3의 청
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판결로
써 몰수 또는 추정을 선고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
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
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를 기각
한다.

④ 제11조제1항의 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
로써 각하한다.

제11조의9(형사소송법의 준용) 독

립몰수·추정 절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u><신 설></u> <u>제11조</u>(국제 공조) (생략) <u>제12조</u>(「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생 략) <u>제13조</u>(포상금 지급) (생략)	<u>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 법」을 준용한다.</u> <u>제11조의10</u>(위임규정) 독립몰수· <u>추징 청구, 심리, 선고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u> <u>제12조</u>(국제 공조) (현행 제11조 와 같음) <u>제13조</u>(「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현 행 제12조와 같음) <u>제14조</u>(포상금 지급) (현행 제13 조와 같음)
---	--